

# 양양군체육회 직제 및 정원규정

제정 2024. 04. 02

일부개정 2026. 05. 22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양양군체육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양양군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 및 양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 이라 한다)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직제의 개편)** 체육회의 기구설치, 직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4조(조직)** ① 체육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체육회는 사무 운영을 위하여 사업총괄과를 두되, 체육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의 업무를 2개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05. 22>

**제5조(체육회장)** 체육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체육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무국장)** ①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직급은 5급으로 한다.

② 사무국장은 체육회 운영 전반과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체육행사의 유치·기획·개최·운영·참가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**제7조(과장)** 과장은 체육회의 각 과를 총괄하고, 직급은 6급으로 한다.

제8조(팀장) 팀장은 팀 업무를 총괄하고, 직급은 7급으로 한다.

제9조(대리,주임) 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팀장 이외의 직원으로 하며 직급은 7-9급으로 한다. <개정 2026. 05. 22>

제10조(직무대행) 사무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체육회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필요시 체육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직원 및 정원

제11조(직원) 체육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직원 구성) 체육회의 직원 구성은 별표 2와 같으며,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체육회 인사규정으로 정한다.

제13조(정원) 체육회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,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사전협의 후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4장 업무분장

제14조(기획총무팀) 기획총무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6. 05. 22>

1. 조직 및 정원, 인사, 복무 등에 관한 사항(생활체육지도자 포함)
2. 총무, 예산, 재정, 성과관리
3. 급여, 복리후생, 직원교육 업무
4. 임원출연금, 후원금 및 기부금 관리
5.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
6. 정관, 제규정 및 각종 내규 운영관리
7. 문서 및 직인관리
8. 재산 및 물품(차량 포함),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
9. 체육회경영에 관한 사항 및 평가업무
10. 언론사 관리 및 대응
11. 홈페이지 운영

12. 생활체육교실 등 보조금 사업 및 기금 사업 운영
13. 스포츠 마케팅 업무 및 기관단체 협력 업무
14. 스포츠클럽 운영 및 회원종목 단체 관리 업무
15. 그 밖에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**제15조(체육진흥팀)** 체육진흥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6. 05. 22>

1. 종합체육대회(도민, 생활, 어르신, 여성, 장애인) 업무
2. 전국·도·군 단위 체육대회(장애인) 유치 및 개최 업무
3. 전국·도·군 단위 체육대회(장애인) 참가 지원 업무
4. 스포츠 마케팅(홍보, 전지훈련 등) 업무
5. 그 밖에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체육행사 관련 사항

**제16조(직무수행과 책임)**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

**제17조(위임규정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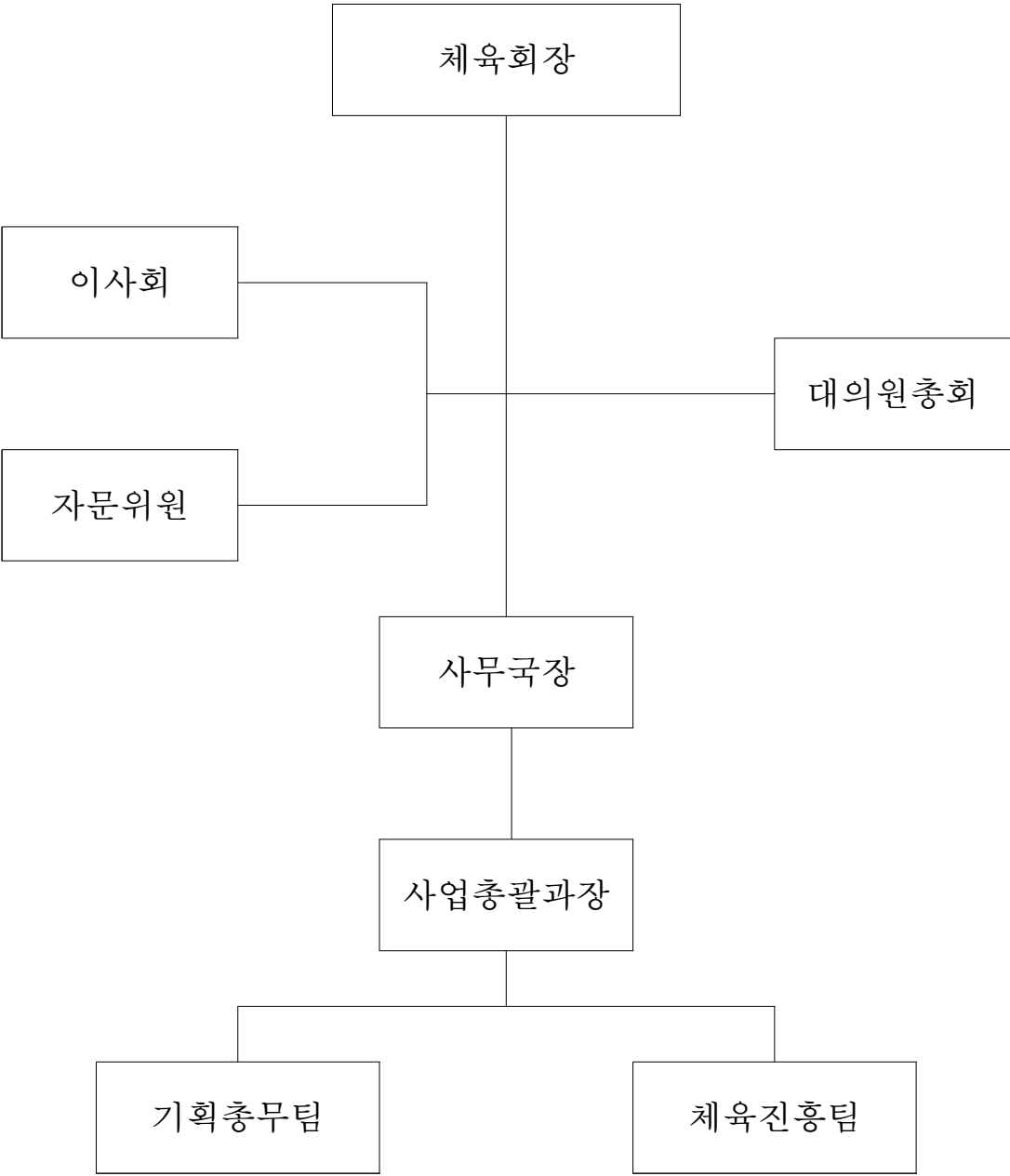
## 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26. 05. 22>

[별표 1]

기      구      표

(제4조 관련)



[별표 2]

정 원  
(제11조, 제12조 관련)

| 구 분 \ 인원수 |          | 정 원   | 비 고 |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|
| 총 계       |          | 18    |     |  |
| 일반직       | 계        |       | 9   |  |
|           | 5급       | 사무국장  | 1   |  |
|           | 6급       | 과 장   | 2   |  |
|           | 7급       | 팀 장   | 3   |  |
|           | 8급       | 대 리   | 3   |  |
|           | 8급       | 전문지도자 |     |  |
|           | 9급       | 주 임   |     |  |
| 지도자       | 계        |       | 9   |  |
|           | 무기<br>계약 | 일 반   | 5   |  |
|           |          | 어르신   | 3   |  |
|           |          | 장애인   | 1   |  |

※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과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음